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10 선고 2020가단2036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최승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혁준

변론 종결 2020. 10. 15

판결 선고 2020. 1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2. 26. 접수 제128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6.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9. 3.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06928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변론이 진행되어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지고 합의를 위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자 재소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는데, 원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중복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아들인 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요구할 것을 걱정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하자 피고 등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위 자녀들과 공동 명의로 하여 홀로 남은 원고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C은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실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며 이에 반대하였다.

2) 피고는 종전 소송 계속 중 종전 소송의 원고대리인의 사무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아버지께서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으나 자식된 입장에서 맞서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계시는 바 대로 아버지께서 불안하셔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저에게 공동명의 제의하셨고 살아계시는 동안 편히 계시도록 받아들이었습니다.

(중간 생략)

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도장 보내드릴테니 공동명의 하면서 제가 지불한 돈은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등기필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증여세 등을 부담하였고, 피고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의 국내 주소지인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필증이 보내졌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보내지 않아 원고가 소지하게 된 것이며, 피고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재산세도 2017년도분은 2017년경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2018, 2019년도분은 원고가 알려주지 않아 납부하지 못한 것뿐이며, 2020. 5. 5. 원고에게 2018, 2019년도분 재산세를 송금하였고, 2020년에 부과된 재산세는 피고가 납부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고, 위 등기 이전과 관련된 증여세 등 세금을 부담하였으며, 2017~2019년도분 재산세를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종전 소송 계속 중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오윤경

별지

1)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마친 등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취지 기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의 오기로 보인다.